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3. 01. 29)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승인안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광용)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승인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2

2. 제안이유

-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 승인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에 따라 계약체결한 선도기업체의 투자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대체업체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승강기밸리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계획 이행 불가업체 (주)도하인더스트리 현황

- 회사명 : (주)도하인더스트리
- 소재지 및 대표자 :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11873번지, 김홍규
- 계약당사자 및 체결일 : 거창군 ⇔ (주)도하인더스트리, 2011. 2. 11
- 분양면적 및 업체 투자계획

투자위치	부지면적	투자금액	고용인원	투자기간	비고
거창일반산단 6BL,④⑤⑥Lot	23,836m ² (7,210.4평)	80억원	100명	2011.2월~2014	

○ 우리군 지원계획

지원분야	부지 분양가			비고
	합 계	자 체	보 조(거창군)	
입지보조금	2,189,527,279원	218,952,729원 (10%)	1,970,574,550원(90%) [기 지원 1,017백만원 잔 액 953백만원]	

- 투자이행 포기사유 : 회사 사정상 승강기 생산 전업률이 50%이상 불가
- 조치사항 : 기 체결한 계약서 해지(해제), 기 지원한 보조금 회수

나. 대체업체 현황 및 투자계획

- 회 사 명 : 동양메닉스(주),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2(가양사옥 4층)
-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62
- 설 립 일 : 1992. 6. 25
- 대표이사 : 심재덕(종업원 63명)
- 기업분류 : 외감, 중기업
- 업 종 : C29162(승강기제조업)
- 기업신용등급 : bb-(보통이상)
- 신용흐름등급 : CR5(현금지급 능력이 보통이하)

다. 기존업체와 대체업체간 투자규모 비교

구 분	기존업체	대체업체	비 교
	(주)도하인더스트리	동양메닉스(주)	
투자금액	80억	179억	2배
고용인원	100명	80명	0.8배
부지면적	23,836㎡ (7,210평)	42,285㎡ (13,699평)	2배

4. 관련법령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5. 검토결과

- 당초 유치업체인 (주)도하인더스트리 사가 회사 사정상 승강기 생산 전업률이 50%이상이 불가하여 2011년 2월 11일 체결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대체업체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 대체업체인 동양메닉스(주)는 투자이행을 포기한 (주)도하인더스트리보다 투자금액이나 소요 부지면적 규모면에서 2배 이상이고 주차타워 부분에서 국내 2위 업체로서 협력업체 유치 기대 등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어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완성에 미치게 될 영향이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대체업체 유치안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 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00.11.15> ① 군수

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0><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0.30>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개정 2010.03.29>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10.03.29>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 1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